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6. 14 선고 2022가단4104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피 고 주식회사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2. 6. 14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74,242,821원 및 이에 대하여 2021. 12. 8.부터 2022. 4. 3.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무변론 판결 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)

판사 김상근

별지